

# 변경 대비표

에셋플러스자산운용(주)

1. 대상 투자신탁: 에셋플러스 차이나 리치투게더 증권 자투자신탁 1호 (주식)

2. 변경시행일(효력발생일): 2023.09.06.

3. 변경사유: 정기 결산으로 인한 갱신 및 기업공시서식 작성기준 사항 반영

4. 변경내용

<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>

항 목	현 행	변 경(안)
<투자결정 시 유의사항 안내>	<p>10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이 경과하였음에도 설정액이 50억원 미만(소규모펀드)인 경우에는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의거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, 집합투자기구 투자시에는 사전에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 또는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11. &lt;추가&gt;</p>	<p>10. 집합투자기구가 설정 후 1년(성과보수를 수취하거나, 고유재산 투자금이 일정 액수 이상인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2년)이 되는 날에 설정액이 50억원 미만인 경우 소규모펀드로서 분산투자가 어려워 효율적인 자산운용이 곤란하거나 「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」의 규정에 의거 임의해지될 수 있으니, 집합투자기구 투자시에는 사전에 금융투자협회, 판매회사 또는 자산운용사 홈페이지에서 소규모펀드 해당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</p> <p>11. 이 자집합투자기구가 투자하는 모집합투자기구가 다른 집합투자증권을 편입하는 경우 해당 피투자펀드에서 발생한 위험이 자집합투자기구에 전이될 수 있으며, 그로 인해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</p>
<요약정보>	<p>투자비용 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 운용전문인력</p>	<p>투자비용: &lt;업데이트&gt; 투자실적추이(연평균수익률): &lt;업데이트&gt; 운용전문인력: &lt;업데이트&gt;</p>
제 2 부. 집합투자기구에 관한 사항	<p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</p> <p>5. 운용전문인력 가. 책임운용전문인력 나. 부책임운용전문인력</p> <p>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 [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] &lt;추가&gt;</p>	<p>2. 집합투자기구의 연혁 &lt;업데이트&gt;</p> <p>5. 운용전문인력 가. 책임운용전문인력: &lt;업데이트&gt; 나. 부책임운용전문인력: &lt;업데이트&gt;</p> <p>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가. 투자대상 [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대상] ※ 집합투자기구의 이익 증대 등 다음과 같은 목적을 위한 기타 운용방법으로 상기 (10)투자증권의 대여를 할 수 있다.</p>

	<p><b>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</b>  나.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(1) 주식 운용전략 : &lt;주요 투자대상국가 현황&gt;</p> <p><b>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</b>  다. 기타 투자위험  &lt;추가&gt;</p> <p>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을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른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]은 <b>22.30%</b>였으며, 이는 아래 수익률 변동성 기준에 의하면 투자위험 6등급 중 <b>2 등급(높은위험)</b>에 해당합니다.</p> <p><b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/b> 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 주 5) 증권거래비용 표</p> <p>&lt;1,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·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&gt;</p> <p>다. 보수 및 지급내역에 관한 사항: &lt;추가&gt;</p> <p><b>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</b>  나. 과세  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사항]</p>	<p><u>1. 수익률 증진: 부수적인 운용전략으로 대여거래를 통해 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으며, 안정적 대여거래 관리와 장기적 관점의 대여 수수료 수익을 추구</u>  <u>2. 기타 효율적, 안정적 운용을 위해 증권대여를 진행할 수 있음</u>  ※ 효율적 운용, 보유 자산의 시장위험 헤지, 환매 대응, 유동성 확대, 담보제공 등의 목적을 위해 상기 (11)증권의 차입을 진행할 수 있다.</p> <p><b>9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전략, 위험관리 및 수익구조</b>  나.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 (1) 주식 운용전략 : &lt;주요 투자대상국가 현황&gt; <u>&lt;업데이트&gt;</u></p> <p><b>10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</b>  다. 기타 투자위험  -증권대차 거래 위험: 증권대차 거래가 일어나는 펀드의 경우 예탁결제원 등 시장참여자들의 관리로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낮으나 해당 대차증권의 미상환, 관련 담보의 부족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</p> <p>라. 이 집합투자기구에 적합한 투자자 유형 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을 실제 수익률 변동성을 감안하여 산정하고 있습니다. 이에 따른 실제 수익률 변동성[최근 결산일 기준 이전 3년간 주간 수익률의 표준편차]은 <b>22.59%</b>였으며, 이는 아래 수익률 변동성 기준에 의하면 투자위험 6등급 중 <b>2 등급(높은위험)</b>에 해당합니다.</p> <p><b>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</b>  나.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<u>&lt;업데이트&gt;</u>  주 5) 증권거래비용 표 <u>&lt;업데이트&gt;</u></p> <p>&lt;1,000만원 투자 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·비용의 투자기간별 예시&gt; <u>&lt;업데이트&gt;</u></p> <p>다. 보수 및 지급내역에 관한 사항: <u>해당사항 없음</u></p> <p><b>14. 이익배분 및 과세에 관한 사항</b>  나. 과세  (4) 연금저축계좌 가입자에 대한 과세  [연금저축계좌 과세 주요사항]</p>
--	--	--

구 분	주 요 내 용		
납입요건	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 한도 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		
수령요건	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		
세액공제 (연간 저축금액 중)	종합소득금액 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)	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(퇴직연금 합산시)	
		50세 미만	50세 이상 ※ 1,2)
	4천만원 이하 (5.5천만원 이하)	400만원 (700만원)	600만원 (900만원)
	1억원 이하 (1.2억원 이하)		
1억원 초과 (1.2억원 초과)	300만원 (700만원)	300만원 (700만원)	12.0% (13.2%)
연금수령시 과세	연금소득으로 분리과세 / 나이별로 5.5~3.3%(지방소득세 포함) 원천징수 1,200만원 이상시 종합과세 (단, 이연퇴직소득은 별도 세율 적용)		
분리과세 한도	1,200만원 (공적연금소득,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,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한도산정에서 제외)		
해지가산세	없음		
연금외수령시 과세	기타소득 원천세율 16.5% 분리과세 (지방소득세 포함) (단,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)		

  

구 분	주 요 내 용
납입요건	가입기간 5년 이상, 연 1,800만원 한도 (퇴직연금, 타 연금저축 납입액 포함)
수령요건	55세 이후 10년간 연간 연금수령한도 내에서 연금수령 (가입자의 수령개시 신청 후 인출)
세액공제	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 이내 1. 연간 연금저축계좌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3.2%(지방소득세 포함) 단, 종합소득 4,500만원 이하(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5,500만원 이하)는 납입액 600만원 이내 세액공제 16.5% (지방소득세 포함) 2.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(ISA)에서 전환 금액이 있는 경우 전환 금액의 10% 또는 300만원(직전 과세기간과 해당 과세기간에 걸쳐 납입한 경우에는 300만원에서 직전 과세기간에 적용된 금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한다) 중 적은 금액 <b>*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는 2023년 1월 1일 이후 납입 분 기준 한도로 작성되었습니다.</b>
연금수령 시 과세	연금소득세 5.5~3.3%(연령에 따른 차등과세, 종합과세 가능) 단, 이연퇴직소득은 3.3% (지방소득세 포함)
분리과세 한도	1,200만원(공적연금소득, 의료목적 및 부득이한 사유의 인출, 이연퇴직소득의 연금수령 시 한도산정에서 제외) 단, 1,2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세 또는 분리과세(15%) 선택 가능 (2023년 1월 1일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)
해지가산세	없음
연금 외 수령 시 과세 (통상적인 경우)	기타소득 원천세율 16.5% 분리과세 (지방소득세 포함) (단, 이연퇴직소득은 퇴직소득 과세기준 적용)
부득이한 연금 외 수령 시 과세	연금소득세 5.5~3.3%(연령에 따른 차등과세, 지방소득세 포함)
부득이한 연금 외 수령 사유	천재지변, 가입자의 사망, 해외이주, 파산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의 3개월 이상 요양, 금융기관의 영업정지, 인·허가 취소 해산결의, 파산선고
연금계좌 승계	상속인(배우자)이 승계 가능



**<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> <신설>**
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
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(세전기준)

\* 위 표는 해당 자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모투자신탁(운용펀드)의 운용내용과 결산기로 작성되었습니다.

**<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>**

[에셋플러스 차이나 리치투게더 증권 모투자신탁(주식)]

(단위: 백만원, %)

구분	당기( 2022.07.07 - 2023.07.06 )			전기( 2021.07.07 - 2022.07.06 )		
	거래 금액 (A)	거래비용		거래 금액 (A)	거래비용	
		금액 (B)	거래비 용 비율 (B/A)		금액 (B)	거래비 용 비율 (B/A)
주식	630,786	583.8822	0.0926	929,396	836	0.09
주식이외의 증권(채권 등)						
부동산						
장내파생상 품	728,097	22.2696	0.0031	1,212,536	51	0.0042
장외파생상 품						
기타 (REPO, 대 차, 콜 등)						
<b>합계</b>	1,358,883	606.1518	0.0446	2,141,932	887	0.0414

주 1)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거래비용을 자산별로 구분하였으며 장외 채권거래, 포워드(장외파생상품) 등과 같이 별도 수수료 미발생 등으로 거래비용의 객관적인 산출이 어려운 항목은 제외되었습니다.

주 2) 위 표는 해당 자투자신탁이 투자하고 있는 모투자신탁(운용펀드)의 운용내용과 결산기로 작성되었습니다

2. 연도별 설정 및 환매현황 <업데이트>

3.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(세전기준) <업데이트>

<p>제 4 부. 집합투자기구 관련 회사에 관한 사항</p>	<p><b>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</b> 가. 회사개요 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 규모(설정원본)</p> <p><b>4.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</b> 가. 회사개요 -회사명 : 주식회사 <u>신한아이타스</u> -주소 및 연락처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<u>여의대로 70 신한금융투자타워 16,22 층</u> / 전화번호: (02) 2180-0400</p>	<p><b>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</b> 가. 회사개요 <u>&lt;업데이트&gt;</u> 다. 최근 2 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<u>&lt;업데이트&gt;</u> 라. 운용자산 규모(설정원본) <u>&lt;업데이트&gt;</u></p> <p><b>4. 일반사무관리회사에 관한 사항</b> 가. 회사개요 -회사명 : 주식회사 <u>신한펀드파트너스</u> -주소 및 연락처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<u>국제금융로 2 길 28 현대차증권빌딩 18, 19, 20 층</u> / 전화번호: (02) 2180-0400</p>
<p>제 5 부. 기타 투자자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</p>	<p><b>5.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</b></p>	<p><b>5. 집합투자업자의 고유재산 투자에 관한 사항</b> <u>&lt;업데이트&gt;</u></p>